

2015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보고

2015. 11. 18.

재 무 국

I. 일반현황

조직·인력

6과 33팀 230명/225명 (정/현원)



기능

과 별	주요 업무
재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제도 개선 및 희망기업 구매 증대 ○ 자금관리 및 세입·세출 결산, 회계심사 등
자산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재산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계약심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용역·물품구매·민간위탁 원가 심사 및 조정 ○ 발주부서 원가분석능력 제고방안 강구 등
세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
세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 세입 추계 및 총괄 조정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지도 감독 등
38세금징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과년도 체납시세 관리 및 징수 총괄 ○ 고액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징수

세입·세출 예산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4년	증 감	
			금 액	비 율
계	14,412,775	13,307,826	1,104,949	8.3
시 세	13,787,530	12,735,620	1,051,910	8.3
세 외 수 입	625,245	572,206	53,039	9.3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4년	증 감	
			금 액	비 율
계	2,336,539	2,253,151	83,388	3.7
인 력 운 영 비 (통 합 편 성)	982,629	927,452	55,177	5.9
기 본 경 비	2,409	2,490	△81	△3.3
사 업 비	86,529	112,608	△26,079	△23.2
회 계 운 영 개 선	1,457	2,085	△628	△30.1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67,096	90,872	△23,776	△26.2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204	204	-	-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10	11	△1	△9.1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118	105	13	12.4
시 세 입 목 표 달 성	9,613	11,110	△1,497	△13.5
조 세 정 의 실 현	8,031	8,220	△189	△2.3
타 기 관 지 원	1,264,972	1,210,601	54,371	4.5
자 치 구 교 부 금	1,263,464	1,208,626	54,838	4.5
출 연 금	1,508	1,975	△467	△23.6

재 산 현 황 (市)

구 분	토지		건물	
	필 지	면 적(천㎡)	동 수	면 적(천㎡)
계	60,077	107,546 (100.0%)	48,130	7,952 (100.0%)
행정 재산	57,684	106,308 (98.9%)	2,419	4,592 (57.8%)
일 반 재 산	2,393	1,238 (1.1%)	45,711	3,360 (42.2%)

II. 정책목표 및 방향

목표

시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재정관리 구현

정책과제

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세수관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세정 구현

저비용·고품질
계약제도로
지속 혁신

시유재산의
공공성과
수익성 강화

실천과제

- ❖ 시정책심사업 지원을 위한 안정적 시세 확보
- ❖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
-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및 운영으로 세수 증대 도모
- ❖ 수익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한 건전한 재정 운영

- ❖ 시민 눈높이 세정혁신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
- ❖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조세형평제고 및 재원 확충
- ❖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
- ❖ 성실납세자 보호강화 및 납세편의 제공

- ❖ 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
- ❖ 계약원가심사 내실화로 예산절감 및 신뢰성 제고
- ❖ 원가심사 영역확대를 통한 민간공사 갈등 해소
- ❖ 조달정책을 활용한 희망기업 지원 확대

- ❖ 市 필요재산의 적극 확보로 주요 정책사업 적기 지원
- ❖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 교환으로 재산관리 효율화
- ❖ 재정 확충을 위한 시유재산의 수익성 제고

Ⅲ.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세수관리

1-1. 시정 핵심사업 지원을 위한 안정적 시세확보

1-2.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

1-3.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및 운영으로 세수 증대 도모

1-4. 수익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한 건전한 재정 운영

- ◆ 사구 세입부서 세입증대 총력체계 구축으로 시세 세입목표 초과달성 전망
- ◆ 안정적 세입 확보를 통해 민선6기 핵심과제 실현 기반 조성

□ '15년 시세 목표 : 13조 7,875억원

□ 9월말 징수 실적 : 12조 2,170억원, 진도율 88.6%

- 전년 동기 대비 6.4%P↑, 최근 3년 평균 79.7% 대비 8.9%P↑
(단위 : 억원, %)

구 분	세입목표 및 실적			'15년 전망 (C)	목표대비	
	'15년 목표 (A)	9월말 징수 (B)	진도율 (B/A)		증감액 (C-A)	비율 ((C-A)/A)
시세 계	137,875	122,170	88.6	150,678	12,803	9.3
취 득 세	34,709	29,873	86.1	41,634	6,925	20.0
지방소득세	37,476	36,433	97.2	41,482	4,006	10.7
지방소비세	9,932	7,840	78.9	9,946	14	0.1
기 타 세 목	55,758	48,024	86.1	57,616	1,858	3.3

□ 금년도 결산전망 : 15조 678억원, 결산전망률 109.3%

- 금년 목표 13조 7,875억 원 대비 1조 2,803억원 초과 예상
 - 전년도 결산액 13조 2,496억 원 보다 1조 8,182억원 증가

○ 주요 시세 세목별 징수현황 및 세입증대 노력

-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가 : 6,925억원 ↑
 - ▶ 9월말 부동산 거래 증가 44.0% ↑ ('14년 215,900건→'15년 310,971건)
-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기타세목 증가 : 5,878억원 ↑
 - ▶ 공제방법 변경(소득→세액), 법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공시가격 상승 등
- 시·구 합동 세입증대 대책 추진 : 부시장 주재 부구청장회의 2회 개최

□ 향후계획

- 출납폐쇄기간 변경에 따른 연도 말 시세 징수율 제고 집중관리

- ◆ 세외수입 부진부서 지도점검 실시를 통한 징수율 제고대책 강구
- ◆ 체납징수, 부과징수 교육 강화를 통한 업무담당자 직무역량 제고

□ 세외수입 징수목표 및 결산전망(일반회계)

- 징수 목표 : **1조 2,469억원** (9월말 5,672억원 징수 45.5%)

- 전년 동기 5,118억 원 대비 554억 원, 10.8% 증가

(단위 : 억원, %)

구 분	징수목표 및 실적			'15년 전망 (C)	징수목표 대비	
	'15년 목표 (A)	9월말 징수 (B)	진도율 (B/A)		증감액 (C-A)	비율 ((C-A)/A)
금 액	12,469	5,672	45.5	7,779	△4,690	△37.6

- 결산 전망 : **7,779억원** (목표대비 62.4% 4,690억원 부족 예상)

- 전년도 결산액 9,292억 원보다 1,513억 원 16.3% 감소예상

- 서울의료원 매각(△4,735억 원) 유찰 등에 기인 함

□ 세외수입 교육·지도점검을 통한 세원관리 강화

-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율 제고

- 사용료수입(96.6% → 97.7%), 재산매각수입(89.4% → 95.1%), 부담금수입(94.8% → 95.3%), 기타수입(59.7% → 74.4%) 등 ('14.9월/'15.9월)

-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점검 및 직무교육 실시

- 세입예산 10억 원 이상 관리부서 중 징수율 부진한 24개 부서 중점 점검

▶ 독촉장 미 발송, 시효결손 미처리, 부과징수 미결의 등 1,100여건 150억 원 시정

- 업무담당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총 750여명)

- 세입증대 특별대책회의 개최(11월) : 실·국·본부 실적점검 등

□ 향후계획

- 3/4분기 징수율 부진 자치구 지도점검 실시(11~12월)

- ◆ 날로 가중되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자주적 방안 추진
- ◆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8:2) 개선 등 지방세제의 근본적 변화 모색

□ 국세 편중 세수구조의 개선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 현행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를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개선
 - 지방소비세율 인상(11%→20%)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지속적 요구
- 시 차원의 자치분권 강화 방안으로 다각적 노력 경주
 - 국회·중앙정부 및 당정협의회 등을 통한 지방소비세 인상 건의('15.5~)
- 지방재정 확충의 이론적 토대와 공감대 조성
 -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협력하여 '2015 지방세 세미나' 공동개최('15.9.9)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체계적 통합관리로 재정수입 증대

- 세금계산서발급에서 신고납부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매입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환급으로 수입 증대(108억원)
- 어린이공원 재조성공사 등 신규사업 사전분석으로 매입세액공제 환급
- 방문교육 등 맞춤형 교육 실시로 직무능력 강화(연간 목표 10회, 9회 실시)

□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추진현황

- 국세 수준(14%)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 축소가 목표이나, 정부의 경제활성화 지원 방침에 따라 '15년 일몰도래 감면조항 일괄연장 조치
 - ▶ '14년 기준 지방세 감면율 : 전국 17.4%, 서울시 15.0% (국세 13.8%)
 - ▶ 우리 시 비과세·감면 축소 실적 : '13년 468억원, '14년 1,703억원

- ◆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한 재무관리의 새로운 틀 모색
- ◆ 원활한 시정 지원을 위하여 시금고를 활용한 재원의 효과적 관리

추진방향

- 재무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 효율적 재무회계 처리를 위해 지출, 계약 등 분야별 개선과제 지속 발굴
- 출납폐쇄기한 2개월 단축에 따른 사전 필요 조치 이행 등

추진실적

- 시민과 함께 완성해가는 결산, 전국 최초 시민참여결산제도 시행('15.4~8)
 - 결산(안) 시민의견 수렴, '시민참여결산의 날' 개최, 알기쉬운 재무정보 제공 등
-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품권 구매 및 관리자침」 수립('15.10.1 시행)
 - 비교견적 의무화, 적정구매 · 관리여부 점검, 구매내역 공개
- 공사입찰 참가자격 강화를 위한 지방계약 법령 등 개정 건의('15.6)
 - 부실 시공업체 수주제한 벌점기준 강화
 - 안전관리 부실 시공업체 입찰참가 제한규정 신설, 적격심사 평가기준 강화 등
-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상문제점 발굴, 사전 조치
 - 지자체 회계의 특수성을 분석, 행자부에 적극 의견 개진하여 업무지침 마련('15.7)
 - 연말 예산집행 쏠림, 대규모 이월 발생 등에 대비하여 연내 집행완료 등 독려
- 효율적 자금운영을 통한 세출예산의 원활한 집행 및 이자수입 증대 도모
 - 9월말 까지 이자수입 225억원 달성(목표액의 89.3%)

향후계획

- 합리적 예산집행,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분야별 개선 지속 추진
-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대가지급기간 단축 등 적기·신속한 자금운영

2.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세정 구현

2-1. 시민 눈높이 세정 혁신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

2-2.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조세형평 제고 및 재원확충

2-3.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

2-4. 성실납세자 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 제공

- ◆ 시민이 만족하는 납세편의,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업무 개선
- ◆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시민편의 최우선의 「세정 혁신방안」 마련

□ 납세자 세금납부 편의성 제고

- 핀테크 기반 세금 간편 결제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 서울시, 시 금고, 다음카카오, 엘지씨엔에스 4자간 MOU체결 (6월)
 - ‘카카오페이 활용 간편결제 세금납부’ 시스템 개발 (6월-8월)
 - 국가정보원 보안성 심의 통과·시범운영(8~9월) 및 계약체결 (11월)
 - 카카오페이 세금납부 시범운영실적(10월말 기준) : 4,103건 438백만원
- 납세자 중심 ‘알기 쉬운 지방세 고지서’ 변경 : 25종 (9월 재산세부터)
 - 가산세 인쇄 공간 확보, 과오납 환부·가상계좌 참여은행 추가 안내 등
- 납세자 관점의 세정혁신 추진사항 : ‘15년 10월말 현재
 - 신축 부동산 취득세 신고 항목 자가 점검표 개발 : 세무사 협회와 협업
 - ▶ 취득자가 세금신고 시 누락하기 쉬운 신고 항목을 예시하여 가산세 불이익 해소
 - 세무조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칙 개선 : 효율적 관리, 절차 등 마련
 - ▶ 세무조사 이력자료 전산화 추진,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세부기준 제도화 추진

□ 향후계획

- 신축 부동산 취득세 신고항목 자가점검표 도입 세미나 개최(11/30)
 - 행정자치부, 세무사·회계사 협회, 지방세연구원, 조세심판원 등
- 과세자료 전산관리 강화를 통한 세원누락 방지
 - 개명 납세자 등 과세이력 추적 관리, 고액체납자 차명 보관 재산에 대한 신고 활성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간 정보공유 추진 등
- 중소기업 및 외국인 등 납세자 지원강화
 - 중소기업 중과세 사전예고제, 외국인 등 사전 납세 안내 등

- ◆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의 안정적 정착 및 운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 ◆ 탈루·누락 세원 발굴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 및 세입확보

□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독립세 전환으로 市 세입 증대

- 법인·개인지방소득세 세수 증대, 전년 대비 **3,094억원 증가**
 - 4월 법인분 1조519억원(2,712억[▲]), 5월 개인분 4,846억원(382억원[▲]) 징수
- 지방소득세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과징 체계 구축 및 직무역량 강화
 - 세무법인협회 등과 지방소득세 업무 협약 체결, 교육 책자 및 강사 지원
 - 우리시 제작 ‘지방소득세 편람 및 신고실무 매뉴얼’ 전국 16개 지자체 지원
 - 조직·인력 확보 및 시스템 구현, 교육 및 실무서 제작 등 업무 역량 강화
 - '17년 개인소득세 신고업무 직접 수행 대비,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중점 추진

□ 객관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 운영

- 탈루·누락 의심법인 세무조사 실시('15.1~9월, 19개 법인)
 - 정비사업 구역 내 국공유지 무상취득 과세누락 등 12,951백만원 추정
- 세무조사 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상자 선정단 등 운영('15.1.28.부터)
 -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 1회(정기), 과세쟁점자문단 3회(수시) 운영
- 주민세 등 탈루 의심 세목에 대한 과세자료 중점 점검
 - 국세청 등 유관기관 과세자료 활용 탈루세액 방지·감면 사후관리 강화
 - 종업원분 주민세 일제조사 시행 및 누락세원 추정('15.11월)

□ 과표 합리화 및 세수의 정당한 귀속 추진으로 시 세입 증대

-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개선방안’ 연구 용역 및 개선 건의
 - 용역 결과물을 활용, 국토부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개선 건의 : '15.5월
- 리스차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총력대응으로 최종 승소 추진
 - '15년 10월 현재 4개 재판부 중 2개부 1심 선고 (승1, 패1), 2개부 진행 중

- ◆ 체납규모의 지속적 증가를 차단하기 위한 체납 특별관리대책 추진
- ◆ 그간에 개발·사용된 체납 징수기법 전면적으로 검토, 개선방안 실천

□ 징수현황('15.9월말 현재) : **1,466억원** (전년 동기 대비 12억원↑)

'15년 징수목표(A)	'15년 9월말 징수실적(B)	목표달성도 (B/A)	'14년 4월말 징수실적(C)	전년 대비 증감액(B-C)
1,825억원	1,466억원	80.3%	1,454억원	12억원

□ 추진실적

-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설정 운영 : 상반기(3.1~5.31), 하반기(10.26~12.31)
- 시·자치구 협업 강화를 통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전개
 - 시·자치구 체납징수 간담회 개최 등 징수목표 능동적 관리
 - ▶ 시·구 체납징수 간담회(3회), 자치구 지도점검(3회), 부구청장 징수회의(2회)
 - ▶ 체납액이 많은 강남권역 5개구는 순회 간담회로 징수율 제고('15.9)
- 가택수색·동산압류 등 강도 높은 현장위주 징수활동 강화
 - 사회저명인사, 호화생활 체납자 등 가택수색 동산압류(106가구)
-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간접강제수단 적극 활용
 - 명단공개 기준 강화 : 3천만원 → 1천만원 이상 체납자('15.9월 시세기본조례 개정)
 - 출국금지(399건), 신용정보제공(8,637건), 관허사업제한요구(6,158건)

□ 향후계획

- '15년도 하반기 시세 체납징수 중점추진 : 10.26~12.31
 - 시·구 전직원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징수 실적 제고
- 고액상습체납자 전방위 행정제재·고발 등을 통한 특별 체납관리
 - 형사고발 및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15.12) 등

- ◆ 시민을 위한 세무서비스 및 신속·공정한 구제로 억울한 납세자 발생 예방
- ◆ 과세자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정보제공으로 신뢰세정 구현

□ 시민에게 가까운 세무서비스로 시민의 세금고민 경감

- 전국 최초 도입한 「마을세무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 도모
 - 20개 자치구 95개동 143명 활동 : 1,684건 상담(9월말)
 - 시민을 위한 무료상담서비스로 자리매김, 대구시에서 벤치마킹 시행('15.4)
 - 우수실적 마을세무사 표창(12명) 및 2기 마을세무사 모집 중
 - 내년부터 전 자치구 208개 동으로 확대 운영
- 조세부와 투명성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
 - 공개세무법정 기능 강화(과세전적부심 포함 시행)
 - 이의신청 관련 진행상황 알림 서비스 제공('15.3월~, 206건)

□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으로 자발적 납세 유도

- 납세자 중심 '알기쉬운 지방세 고지서' 변경 추진('15.9월 25종 변경 완료)
- 세무조사 반복 지적사항 사전 체크리스트화 추진(취득세 신고분야 개발 예정)
- 납기 전 납세정보 안내로 자진납부 기회 제공
 - 취득세 비과세·감면 유예자,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 등 안내(분기별 시행)
 -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목에 대한 납부 마감일 문자발송

□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 및 납세편의 증진

- 세무종합시스템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안전성 확보
 - 8개월간('15.3~10월) 44명 관련 직원 및 4억 9천만원 예산 반영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83억 건 암호화 조치완료('15.10월)
- 세외수입 개인별 체납 통합안내시스템 구축(9월)
 - 개인별 체납 통합안내장 발송 체계 구축으로 세입증대 효과 기대
 - 우편료·행정비용 등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체납관리 가능

3. 저비용 고품질 계약제도로 지속 혁신

3-1. 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

3-2. 계약원가심사 내실화로 예산절감 및 신뢰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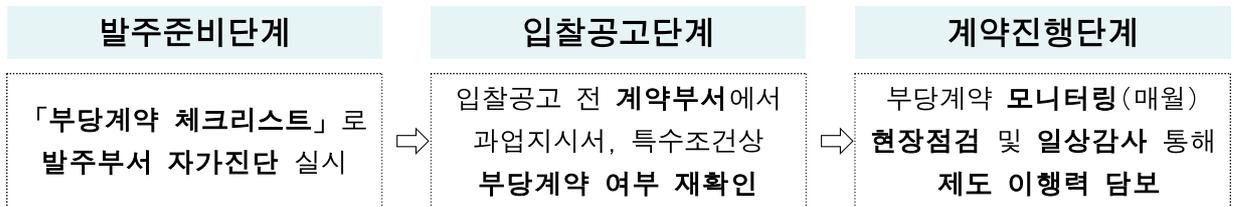
3-3. 원가심사 영역 확대를 통한 민간공사 갈등 해소

3-4. 조달정책을 활용한 희망기업 지원 확대

- ◆ 「甲乙관계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 정착
- ◆ 계약정보의 효율적 제공으로 계약 투명성 및 활용도 제고

□ 부당계약 근절을 위한 점검 추진

- 단계별 부당계약 점검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부적정 계약관행 감소
 - 市 전기관(128개)대상 점검 결과 부당계약을 35.6%(1월) → 8.4%(6월)



- 기관별 실적 공개 및 교육을 통해 재발방지 확행
 - 매월 부당계약 실적 정기공개 및 우수사례 전파로 기관 간 정보공유
 -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 및 매뉴얼 배포를 통해 담당공무원 인식 개선('15.7)

□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계약정보 통합 공개 추진
 - 기관별 분산된 26개 계약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 (26개→1개)
 - ▶ e-호조, G2B, 국토부 등 관련기관 정보를 연계하여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
- 대시민 맞춤형 계약정보 서비스 제공
 - 발주계획, 계약체결내용, 준공대가지급, 하도급 사항 등 계약 전과정 시민 공개
 - “시민-공공기관”간 쌍방향 소통을 통해 공공구매 정보교류 창구 제공
 - 「시스템 시범운영 테스트단」 운영으로 자료 정합성·오류 검증 실시('15.8~11)
 - 데이터 정합성 검증시 나타난 사용자 요구 및 문제점 보완('15.12)
 -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홈페이지 오픈('16.1)

- ◆ 품셈 개선 및 심사기법 축적으로 비용 절감 및 공사품질 향상
- ◆ 심사역량을 보다 업그레이드하여 심사의 신뢰성 및 효율성 향상

서울시 현장여건에 적합한 「품셈단가 정상화」 추진

- 계약심사 절감실적 : 1,594억원, 절감률 6.3%

2015년 절감목표		절감 실적('15.9월말 기준)			
목표액	절감률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절감액	절감률
1,558억원	6.0%	2,847건	25,278억원	1,594억원	6.3%

▶ '03년 이후 13년째 운영, 설계품질 향상과 예산절감 기여(총 2조 8,454억원)

- 정부품셈에 없거나 불합리한 공사원가 개선을 위한 「서울형품셈」 개발

- 금년목표 11건 중 4건 완료(건축·조경 2건, 설비 2건)
- 개발 중인 7건(토목 3건, 건축·조경 2건, 설비 2건)은 연내 개발 마무리
 - ▶ 개발절차 : 대상선정 → 현장실사 → 개발안 작성 → 전문가 지문 → 개발확정

불필요한 설계는 예방, 필수 비용은 반영하는 합리적 심사

- 효율적 원가산정 및 건설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경제성 심사제」 운영

- 심사대상 : 50~100억원 공사 (금년부터 100억원 이상 2건 시범운영 중)
 - ⇒ 8건 심사완료, 31억원 절감 / 218개 공정 설계개선

〈설계경제성 검토〉 설계가 완료되기 전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 불합리한 설계를 사전에 수정하여 공사품질의 가치 향상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

▶ '13년 6건(32억원 절감-58개 공정개선) / '14년 4건(28억원 절감-79개 공정개선)

- 「원가조정거버넌스」 구성·운영을 통한 계약심사의 신뢰성 제고

- 공무원·발주업체·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14년 30명⇒'15년 43명)
- 금년 중 총10회 운영(계약심사 절감 397억원, 민간공사 원가 절감 524억원)

- 2016년부터 설계경제성 심사대상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운영

- ◆ 공공분야 공사원가 심사 노하우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
- ◆ 재건축재개발 등 주민이 발주하는 민간공사에 대해 「원가자문 서비스」 무료 제공

□ 추진배경

-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원의 공사원가에 대해 막연한 불신감으로 시공사와의 갈등, 사업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적정한 검증이 필요
-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원가 검증서비스를 통해 조합-시공사 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비 절감으로 시민에게 경제적 이익과 편의를 제공

□ 사업개요

- 서비스 대상 :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주민이 요청한 사업
- 서비스 절차 : 5단계 처리(15일 이내)



- ▶ 외부전문가, 공무원,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는 '원가조정거버넌스' 운영으로 공정성 확보

□ 추진실적

- 시범서비스 운영 : 재개발·재건축 등 3곳 시범서비스('15년 하반기)
 - 「민간공사 원가자문 T/F팀」 구성·운영(9명)
 - '15년 10월말 현재 1건 완료(서초 무지개 재건축) 2건 진행 중
 - ▶ (완료) 「서초 무지개 재건축」 서비스 결과 524억원 절감(4,531억원→4,007억원)
 - ▶ (진행중) 강동구 천호1 도시환경정비구역, 중랑구 중화1 재개발지역
- 업무 재조정을 통해 민간분야 원가자문에 필요한 인력 확보
 - 절감률이 낮아 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심사제외('15.7)
 - 정원 상계조정을 통해 민간공사 심사에 필요한 직렬 확보(토목, 녹지 ⇒ 건축, 기계)

□ 향후계획

- 시범서비스 결과분석 및 보완하여 '16년 서비스 실행계획 수립('15.12)

- ◆ 공공기관의 구매력과 기업의 CSR을 활용하여 희망기업 제품 우선구매
- ◆ 희망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계약제도 및 운영시스템 개선

사업개요

- 市산하 전 기관(74개) 및 민간기업에서 희망기업 제품 구매활성화 추진
 - 시·자치구 등 기관별 구매가능 예산 등 고려, 구매 목표설정과 실적관리
 - 우수 희망기업 판로추천을 통한 민간기업 온라인쇼핑몰 연계
- 희망기업 제품 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 희망구매 정보지도 구축
 - 「희망구매정보지도」 및 공공구매 통합관리 기능 고도화(수기→전산화) 등

추진실적

- 공공구매 담당자의 희망기업 제품 구매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3회)
 - 공공구매 시스템 사용방법 및 공공구매 필요성 교육('15. 5~6)
 - 공공구매 정보 소통과 공유를 위한 담당자 워크숍 실시('15. 7)
 - 우수희망기업 30개소 민간기업 인터넷 쇼핑몰 입점 추진
 - 민간기업 온라인 쇼핑몰(SK 행복나래) 사회적기업 입점 지원('15.10~)
 - 대형 온라인 쇼핑몰(롯데홈쇼핑) 희망기업 광고표출 및 제품등록 협의
 - 사회적경제기업 2,894개에 대한 희망구매 정보지도 제공
 - 중증장애인, 마을·자활 기업 등의 생산제품 및 기업정보 제공
 - 대상기업 지속적 확대 및 계약정보 등 다양한 정보 추가 개발('15.10~)
- ➔ '15년 목표 4조 4,483억원 중 9월말 현재 3조 2,023억원(71.9%) 달성
- ▶ 市 14,005억원(88.7%), 區 7,855억원(45.6%), 투자출연 10,163억원(88.3%)

향후계획

- 희망기업 구매 우수사례 발굴, 확산 추진('15.12)
 -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대상 개인 5명, 기관 6개 선정·표창
- 하반기 희망기업 공공구매 추진 기관성과 평가 실시('16.1)

4. 시유재산의 공공성과 수익성 강화

4-1. 市 필요재산의 적극 확보로 주요 정책사업 적기 지원

4-2.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 교환으로 재산관리 효율화

4-3. 재정 확충을 위한 시유재산 수익성 제고

- ◆ 대규모 재산 취득 및 소유권 적기 확보를 통해 시정 역점사업 추진 지원
- ◆ 관계기관과 긴밀하고 지속적 협상으로 우리시에 유리한 전략 추진

사업개요

- 공공기관 이적지 등 구매입한 대규모 재산의 차질없는 인수 및 소유권 취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2.11 매입), 한국정보화진흥원('13.10 매입), 서북권 복합문화센터 부지('13.12 매입), 동북권 복합문화센터 부지('14.12 매입) 등
 - ▶ 시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매입대금 3~5년 분할납부 방식으로 매매계약 체결
- 사업부서와 협업하여 시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재산 취득 지원
 - 오랜 재산취득 경험 및 노하우 활용, 토지소유자와 가격 협상 등 협력 추진

추진실적

- 공공기관 이적지(2개소)의 재산인수 및 소유권 취득으로 행정수요 적기 대처
 - 한국정보화진흥원('15.6 취득완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15.8 취득완료)

재 산 명	면 적(m ²)	매입금액	활용용도
한국정보화진흥원	토지 : 6,683 건물 : 7,844	409억원	서울어울림플라자 (복지본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지 : 21,937 건물 : 7,988	508억원	바이오 의료 R&D 앵커 (경제진흥본부)

- 분야별 전문가 참여 재산인수 T/F 운영을 통한 원활한 재산인수 추진('15.6~8)

- 풍문여고·국세청 별관('15.5 취득) 등 각 사업부서 재산확보시 측면 지원

취득대상	면적(m ²)	취득방식	활용용도
풍문여고	토지 : 13,839 건물 : 11,251	매입	공예박물관 (문화본부)
국세청 남대문 별관	토지 : 1,088 건물 : 3,890	청와대사랑채와 교환	역사문화공간 조성 (도시재생본부)

향후계획

- 서북권 및 동북권 문화센터 부지 적기 인수 및 소유권 취득('15.12~'16.12)

- ◆ 우리시-국가 상호점유 재산에 대한 소유와 점유 일원화로 효과적 재산관리
- ◆ 재산 일부 점유에 대한 불편 해소 및 효율적 활용 추진

□ 주요 추진내용

○ 추진경위

-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계획 수립」(시장방침 제91호) : '14.3.30
-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14.6.30
- 교환재산 감정평가 및 교환일정 등 기관간 협의 : '14.7~'15.7
- 교환계약 체결, 소유권 이전 및 취득재산 재산관리관 지정 : '15.7~10

○ 교환재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필지수(동수)	재산가액	주요 교환 재산
국유재산 (市 취득)	68	278,539	세종문화회관(2,630억원), 정수장(37억원), 물재생센터 부지(48억원) 등
시유재산 (市 처분)	164(15)	278,331	중랑경찰서(170억원), 경호동(9억원), 법원청사부지(310억원), 북한산국립공원(259억원) 등

- 市 취득 재산 : 문화시설·청사부지 등 市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국유지
- 市 처분 재산 : 경찰서 점유부지 등 우리시 활용이 곤란한 국가기관 점유 사유지

○ 교환재산 가격 산정(「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
- 교환대상 재산 목록 확정시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교환차액 최소화

○ 추진효과

- 점유와 소유권의 일원화로 재산의 적극 활용 및 효율적 재산관리 가능
- 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행정력 낭비요인 및 기관간 분쟁소지 제거

□ 향후계획

-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와의 재산교환 적극 검토·추진

- ◆ 서울의료원 등 매각대상 재산의 時價 반영·공개매각으로 수익성 제고
- ◆ 시유재산 전문위탁관리 지속 추진으로 관리의 효율성 및 수입 증대

□ 주요 추진내용

-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촉진을 위한 다각적 조치 및 제도개선
 - '15년도 시유재산 공개매각 추진 : 3회(3, 6, 9월), 6건 낙찰(824.3㎡, 23억)
 - 사업시행자와의 긴밀한 협의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내 시유지 적극 매각
 - ▶ 강일2지구 28억('15.9), 신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58억('15.6), 세곡지구 57억('15.4) 등
 - 매각가능 재산목록 인터넷 상시공개로 시민 매수기회 확대
 - ▶ 225건, 12,855㎡ 목록 공개('15.10월 현재), 분기별 자료 갱신
- 전문기관을 통한 시유재산 위탁관리 지속 추진으로 수익성 제고
 - 위탁관리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15.5~6)
 - ▶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15.5.14)
 - ▶ 신규 수탁기관(SH공사)과 위탁관리 계약체결('15.6.30)
 - '15년도 위탁수입 정산 및 세입처리로 시 재정수입 증대('15.8)
 - ▶ 매각수입 60억원, 대부분 12억원, 변상금 2억원 등 세입조치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추진
 -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 및 재산 감정평가 실시('15.7)
 - 1회 매각공고('15.8), 2회 매각공고('15.9) 추진(결과 : 유찰)

□ 향후계획

- 2015년도 제4차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공개매각 추진('15.12)
- 2016년도 시유재산 위탁관리 수입 정산 및 세입처리('16년중)
- 서울의료원, 유관부서와 다각적 검토를 거쳐 2016년도에 매각 추진 예정

IV. 세입·세출 결산 전망 (재무국)

● 세입 결산

(단위 : 억원, '15.9월말 현재)

구 분	'15 예산액	징수내역		결산전망
		금 액	징수율(%)	
계	144,127	123,355	85.6	152,327
시 세	137,875	122,170	88.6	150,678
세 외 수입	6,252	1,185	19.0	1,649

●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15.10.26 기준)

구 분	'15 예산액	집행내역		결산전망
		금 액	집행률(%)	
계	2,336,539	1,449,843	62.1	2,336,120
인 건 비	982,629	815,421	83.0	982,629
기본경비	2,409	1,317	54.3	2,298
사 업 비	86,529	72,916	84.3	86,221
재무관리	1,457	1,129	77.5	1,404
자산관리	67,096	57,735	86.0	67,093
계약심사	204	168	82.4	204
세 제	128	88	68.8	128
세 무	9,613	8,498	88.4	9,370
채납징수	8,031	5,298	66.0	8,022
타기관 지원금	1,264,972	560,189	44.3	1,264,972
자치구 교부금	1,263,464	558,742	44.2	1,263,464
출연금	1,508	1,447	96.0	1,508

V.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총 관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40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40	38	2	-	-
	시정.처리요구사항	15	15	-	-	-
	건의사항	14	12	2	-	-
	기타(자료제출 등)	11	11	-	-	-

시정 · 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을 보면 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7명으로 내부위원의 비중이 너무 높음. 외부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등 공유재산심의회 전문성과 공정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들의 전문성 발휘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위원은 행정경험을 살려 도시관리계획 절차 선행여부, 재산관리, 운영비 확보 등 의견 제시 - 외부위원은 법률, 부동산개발 및 건축, 감정평가 등 해당분야에 대해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전문적 심의에 기여 ○ 재산매입, 신·증축사업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위치, 규모, 입지조건, 복합활용 가능성, 도시계획 적합여부 등에 대해 공공개발센터와 연계하여 사전 적정성 협의 검토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전 주요사업 현장방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취득 및 증축사업부지 심의전 현장방문 우선실시로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자문 추진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7명으로 재구성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심의회 내·외부 위원비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있으나, 향후 심의에 필요한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분야 전문위원을 추가로 위촉토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와 관련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한 81억원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가산세 지연납부, 조달청수수료 지연납부 등에 대해 잘못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은 반드시 청구되어야 할 것이며 정기적인 교육으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기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에서 환급거부된 81억원 중 74억원은 경정청구분이며, 나머지 7억원은 고충청구분임 ○ 경정청구분 74억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서울시 의견에 따라 환급가능한 것으로 회신('14.12.31.)하여 '15.2.27. 전액 환급(82억원, 이자포함) 세입조치 하였고, 고충청구분 7억원은 세무서 기각 결정으로 종결 처리 ○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직무교육을 통하여 담당직원의 업무능력을 강화하여 신고누락 등으로 인한 가산세 발생 방지 - 연 2회 정기교육 외에 부진부서 집중교육(4회), 사업소·자치구 방문교육(4회) 등 연 10회로 확대 실시
<p>3. 해마다 체납징수특별대책을 마련해도 체납은 줄어들지 않고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임. 당해 연도에 체납이 발생하여 계속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체납징수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액은 경제여건에 의한 납세자의 담세력 부족과 가산금 가산 등의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체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해 전년도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연도에 부과되는 특성상 부도·폐업이나 부동산 경·공매 등 담세력 상실 이후 과세되므로 이로 인해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당해 연도 체납이 누증되지 않도록 현년도 체납중점정리계획('15.1월) 등을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과 자치구 지도·감독으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재산·소재불명 등 담세력이 없는 체납자는 집중조사 후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당해 연도 체납누적을 줄여가고 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홍보 강화 등을 통해 체납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체납이 발생한 경우 압류 등 채권확보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는 한편, ○ 연 2회 당해 연도 체납중점정리기간 설정 등을 통해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 서울시 시금고 지정을 단수 금고의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기금의 경우 금리가 더 높은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렸음.</p> <p>향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고 합리적인 시금고 운영을 위하여 시금고 선정 시 복수금고 제도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p> <p>(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시금고인 우리은행과 약정기간 4년('15.1.1~'18.12.31) 동안 단수금고로 운영토록 약정 체결함('14.4.24) ○ 차기 시금고 선정시('18년)에는, 사전에 금융 관련 교수,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 복수금고 운영여부를 포함하여 우리 시에 보다 유리하고 합리적인 시금고 운영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임
<p>5. 세무종합시스템 외주 용역업체 직원의 노트북 사용 및 보조 저장 매체 반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데 반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는 USB 복사방지 프로그램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관리에 문제가 있음. 시청, 자치구의 시스템 사용자 접근 권한 관리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보안관리에 유의하기 바람</p> <p>(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통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종합시스템은 내부망으로 구성되어 스마트폰을 통한 직접 접근이 불가하며, 개인PC에 연결하여 자료를 유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시스템으로 통제됨 - 보조기억매체(USB, 스마트폰 등)사용에 대한 통제는 정보통신 보안 업무규정에 의거하여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시스템을 시청 및 자치구별로 별도 구축·운영하여 통제함 ※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제31조 (행자부, 2009. 6)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제31조(보조기억매체 관리)</p> <p>① 행정기관의 장은 보조기억매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장 등을 보조기억매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행정기관의 장은 USB 등 보조기억매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보안USB관리시스템 등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12년도까지 서울시청 및 23개 자치구는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고, 미도입 2개 구청(양천, 도봉)은 '14년 3월 「자치구 세무종합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실태 점검」 시 도입을 강력 권고 조치한 바 있음 ○ 그 결과 양천구에서는 '14년 12월에 구축완료 하였고, 도봉구는 '15년 예산확보로 '15년 5월 구축완료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전체 사용자 접근권한 관리현황 점검 ○ 주1회 인사변동에 의한 전출자 및 미사용 사용자 전산 대사 후 강제 정지처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6.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는데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된 후 시세감면조례가 개정되어도 늦지 않을 것이라 판단됨. 검토하기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57회 시의회 상임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보류 ○ '15.3월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의결 ○ '15.3월 재무국에서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 폐지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안건 철회 요청 후 '15.4월 시의회 안건 철회 통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시범운영 등 사업경과를 확인한 후 시세감면조례 개정 추진
<p>7. 상수도사업본부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을 확인해보고 기술 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계약자가 결정되는 계약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상수도관 정비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14.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최 및 주관 :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시의회(환경수자원위원회) - 발제 및 토론자 : 교수, 기술·계약분야 전문가, 관련협회 등 - 참석자 : 서울시, 타 광역시, 관련업체 등 250여명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 및 비굴착 구간 선정기준에 대한 기준 강화 · 업체간 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방법 검토 ○ 비굴착 관 갱생 공사방법 개선 시행('15.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개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공법이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보유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 신기술 단가 적용시 유사공법 중 최저단가 적용 · 굴착 및 비굴착 적용 대상구간 선정 기준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구간에 대한 실질적인 지하지장물 및 교통량 조사 ·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시공 품질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검사 : 반기별 1회 ▸ 사후평가 : 준공시점부터 3년, 5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 등에 따라 신기술 보유업체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 시행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8. 지방세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책이 필요함.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공개하고 있는데 그 공개 체납액 기준을 1,000만원 또는 2,000만원으로 한도를 낮추는 등 보다 강화된 규정마련이 필요함.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p> <p>(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액 기준을 낮춰 강력한 징수수단이 될 수 있도록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관계법령 지속적인 개정 건의결과 1,000만원 이상으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자치부주관 지방세 제도개선 포럼 : '14. 2월 - 행정자치부 지방세기본법 개정건의 : '14. 3월 -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회의시 개정건의 : '14. 11월 - 광역자치단체 기획관리실장 회의 : '15. 1월 - 지방세기본법 개정 : '15. 5월 <p><지방세기본법 개정 건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 공개대상 : 지방세 체납 <u>3천만원 이상</u> → <u>1천만원 이상</u>
<p>9. 2014년 10월, 안전행정부에서 개인 감정평가사도 지방자치단체 보유 토지, 건물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 되는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 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조례개정 및 관련 규정의 정비 등 추진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p> <p>(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15.3.1)으로 공유재산의 감정평가 업무 주체가 확대됨(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및 개인사무소) ○ 법령 개정에 따라 타 시도 감정평가 운영현황 파악 ('15.4),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개인감정평가사 참여 공지 ('15.5), 개인감정평가사 참여서류 접수 및 적정여부 확인 ('15.6) 등을 추진하였으며, ○ 감정평가업무의 혼란 예방, 개인 사업자와 감정평가법인간의 형평성 및 기회균등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2015.8.10.)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0. 비용절감 및 수익증대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취지는 좋더라도 아이디어가 실무에 활용되어야 하나 사례가 별로 많지 않음.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임. 공모사업 개선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아이디어 경진대회 추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기간 : '15.7.13 ~ 8.7(4주간) - 공모실적 : 104건(시민 45, 공무원 59) - 평가위원 : 8명(외부 4, 내부 4) - 평가항목 : 재정기여도(40%), 실현가능성(40%), 창의성(20%) - 시 상 : 6건(시민 2, 공무원 4) - 내 용 : 수입증대 규모가 크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뛰어난 제안이 부족하여 최우수 및 우수 선정하지 않고 장려 제안만으로 최종 결정 ○ '15년도 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평가 결과, 기존에 제출된 제안과 중복·유사 제안이 다수 있었고,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재정기여도·실현가능성·창의성 부족으로 정책 반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제안은 없었음
<p>11. 미사용 시유지 중 현재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미사용 소규모 시유지에 대해 자치구 등과 협의하여 현황 파악과 아울러 관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용 시유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이 100㎡ 이상의 미사용 시유지에 대하여 전 부서에 행정목적 활용 소요조회(자산관리과-455호, '15.1.13) - 위임·위탁기관(자치구, 캄코)에 시유지 실태 현황조사 및 관리 철저를 지시(자산관리과-466호, '15.1.13) 하였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정기실태조사를 실시('15.7월~)하여 무단점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2. 서울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이 최근 4년간 총46억 7천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출연금을 내지 않는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이 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p> <p>정관 변경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하여 개선하기 바람.</p> <p>(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내용) 우리시 출연금 규모에 걸맞는 성과를 내도록 연구원 활용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과제 선정,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참여 등 적극 활용으로 정책반영 비율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연구원, 행자부 및 시·도공무원과 네트워크 공동 구성으로 연구과정 참여 및 결과 공유 - 지방세연구원과 협력 서울시 재정확충 모색 지방세 세미나 개최 ('15.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 특성 반영한 재정확보, 세제개선 방안이 정책 반영되기 위한 여론 공감대 형성 · 연구원에서 학계, 전문가를 초빙, 우리시 및 25개 자치구 세수증대 방안 등 과제 선정 ○ (개선방안) 지자체 감사 선임 등 지방세연구원 감독기능 및 운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 감사에 지자체 참여 추진(행자부 단독 → 행자부·지자체 공동 :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기본법(제145조제3항)을 개정(1명→2명, '15.5월) 하였고, 이를 반영 지방세연구원의 정관(제10조) 개정 추진 ('15년 12월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감사 1인 임기 2년, 광역·기초 교대 '16.2월 선출 - 지자체 선임이사 및 파견 직원 활용, 시·도 세정과장회의 안전 상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운영과 감독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서울시(재무국장) 선임이사 수행 및 직원 1명 파견 근무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의 세수확대와 지방세제 개선에 필요한 연구과제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서울시 세정 발전을 뒷받침 하는 정책개발 및 정책반영에 적극 활용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3. 지난 7월 리스차량 운용사와 자동차 취득세 징수와 관련한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에 대한 서울시에 부정적인 신문 보도가 났는데 소극적인 재무국의 대응으로 시민들에게 서울시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생김. 향후 언론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7월 서울시 출입기자단에 보도참고자료 2종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서울시 판정패', '1라운드 패배' 라는 보도에서 서울시 '절반의 승리', '리스차 과세 정당'이라는 내용으로 변경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리스차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바, 소송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에 선제적으로 대응, 긍정적 보도를 유도하여 서울시 세정 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겠음
<p>14.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매각은 2014년도에 매각하여 세입 (3천억원) 처리토록 수립했으나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금년 매각계획을 실현할 수 없음에도 추경예산편성 시 예산 조정을 실시하지 않는 등 세입 예산 운용을 부실하고 부당하게 처리함. 향후 세입예산 추계를 철저히 하여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공유재산매각 계획을 수립할 시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차질이 없도록 할 것.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도 서울의료원 매각에 대해 세입예산은 3,000억원 편성 하였으나 매각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출예산에 미편성하여 '14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예결위에 상정하였음 → 심의결과 "기존예산 활용방안 검토"토록 하고, 추경에 미편성됨 ○ 우리시 도시계획 및 재정추진 등에서 여건변화가 발생하여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구체화되는 '15년에 매각기로 매각시기를 조정하게 되었음 ○ '15년도 예산은 예산운용에 맞게 서울의료원 매각수입과 함께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예산 : 매각수입 4,735억원(8,608억원의 55%) - 세출예산 : 감정평가 수수료 623백만원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예산 편성을 보다 철저히 하여 지적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5. 체비지를 재무국이 관리하지 않고 도시계획국이 관리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통합관리 하도록 할 것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비지 관리에 관한 현행 법규가 도시재생본부가 관리주체임을 명시하고 있고, ○ 체비지 재산관리관(도시활성화과장)에게 통합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요청(자산관리과-517호, '15.1.14) 결과, ○ 체비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로 그 사용용도가 정해진 특별회계 재산으로 현행과 같이 업무주관부서(도시활성화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회신됨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현행 체비지 재산관리관 : 업무주관과장(도시활성화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현행 체비지관리에 관한 총괄책임자는 도시계획국장이, 분임 관리자는 도시개발사업 주관과장으로 규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서울시 공유재산 중 특별회계 재산의 재산관리관은 업무주관과장으로 지정 </div>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관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각 재산관리관이 관련 운영기준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건의사항

건의사항	조치결과
<p>1.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매각과 관련하여 내년 발표예정인 영동권 종합발전계획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서울시 세입이 증대되도록 소신을 가지고 매각을 추진하기 바람.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도에 매각하려던 서울의료원 재산은 우리시 도시계획 및 재정 측면 등에서의 여건변화가 발생하여 매각시기를 2015년으로 조정하게 되었음 ○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동 부지의 도시계획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15.5월)함으로써 토지의 효용도를 최대한 상승시켰으며, ○ 2015.8~9월 2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으며, 개찰결과 유찰되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실·국과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향후 처리방안을 결정할 계획임
<p>2. 서울시의 세입과 세출예산을 총괄하는 재무국에서는 서울시의 재정고권 확립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몇배를 더해서 각종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방안 마련이나 개선 건의 및 협의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임. 그동안 건의했던 각종 사안들에 대한 재검토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사안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추진결과를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기 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13~15.9.)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은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리스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납세지의 합리적 개정 등 총 138건이며 ○ 이 중 '상속차량 연납 자동차세 자동승계' 등 20건(중장기 검토 포함)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었음 * '15.10.1.자 정부 제출 개정법률안 통과 이후 4건 추가반영 예정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제도개선 반영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방법 다양화(제한·지명경쟁 도입) - 상속차량 연납 자동차세의 자동승계 등 </div>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서 및 국회 등과 사전협의 및 조율을 거쳐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향후 그 결과에 대하여 상임위에 보고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조치결과
<p>3.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시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중앙부서와 국회 등과 사전 협의와 조율을 거쳐 반영률을 높이기 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행자부 주관 제도개선 토론회 등에 참석하여 우리시 건의사항을 각종 법령에 반영토록 노력하였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차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14.4~5월, 33건 건의) - 공유재산 토론회('14.6월, 5건 건의) - 회계관계공무원 워크숍('14.11월, 2건 건의) 등 - 출납폐쇄기한 단축 조치 및 공유재산법령 정비 추진사항 점검 전국 시도회계담당관 회의('15.8.24, 2건 건의) - '15년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총 36건 제출, 7건 채택) - 새정치민주연합 예산·정책협의회시 지방소비세 인상(20%)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요청('15.8.19) ○ 국회 의원실 방문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한 사전협의 및 조율을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납폐쇄기간 단축 관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건의 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건의과제 제출('15.6.24)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건의했던 내용 중 미반영 되었거나 중장기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인 방문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토록 하겠음
<p>4. 서울시 재정지원이 필요한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공유재산심의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방안, 재원확보여부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주기 바람.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현황 및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별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市 소유 재산관리·처분은 市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자치구 소유 재산관리·처분은 자치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고 있음 ○ 자치구 재산취득사업 재정지원시 자치구 예산재정확보 검토 철저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재산취득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추진하는 시 사업주관 부서와 예산총괄부서에 자치구 예산·재정 확보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재정을 지원토록 촉구하는 협조공문 시행

건의사항	조치결과
<p>5. 중앙정부 등에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이 단순히 건의사항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건의사항에 체크하여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추진경위 등을 행정 자치위원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13~15.9.)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은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리스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납세지의 합리적 개정 등 총 138건이며 ○ 이 중 '상속차량 연납 자동차세 자동승계' 등 20건(중장기 검토 포함)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었음 * '15.10.1.자 정부 제출 개정법률안 통과 이후 4건 추가반영 예정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및 중장기 건의사항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회 등을 방문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반영된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보고 드리겠음
<p>6. 내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비용과 인력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하기 바람.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부터 시·자치구 정원조례 개정 추진과 병행, 지방소득세 담당 인원 충원 및 팀 신설 ○ '15년도 신규 채용 인원 132명을 자치구 배치 및 지방소득세 전담팀 신설 등 조직개편 완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배치 지방소득세 담당 직무교육 강화를 우선 목표로 하고 ○ 개인소득(종합,양도) 신고 업무를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17년을 대비,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음
<p>7. 청와대 사랑채와 국세청 남대문 세무서 별관의 교환과 관련하여 아직 실질적으로 재산의 맞교환이 성사되지도 않았는데 언론에 보도됨으로</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 사랑채(시유재산)와 국세청 남대문별관(국유재산)과의 교환추진을 위하여 상호 재산을 검토한 결과 교환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건의사항	조치결과
<p>인해 교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동안 청와대 사랑채에 사용된 매물 비용도 감안하고 맞교환했을 시 득실 등 파악이 필요하며 시민의견수렴도 실시하여 문제점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람.</p> <p>(자산관리과)</p>	<p>(청와대 사랑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재산활용도, 입지성(청와대 앞) 등을 고려해 볼 때 국정홍보, 전통문화체험관 등의 활용을 위해 정부의 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여 교환 처분이 바람직하고, <p>(국세청 남대문별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본관 및 서울시의회 등과 인접하고 덕수궁, 대한성공회성당 등 주변에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도서관 등과 연계한 재산의 활용도가 높아 교환 취득이 적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환차액 최소화 등 우리시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교환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여, 상호 재산(토지 및 건물) 감정가액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음('15.5.7) -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교환차액(4,447천원) 지급 완료
<p>8.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한 부서 또는 징수관련 교육 참석이 부진한 부서에 대하여 독려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건수 등 정확한 현황 파악 등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향후 세외수입 체납이 줄어들도록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개선계획 수립하기 바람.</p> <p>(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세외수입 관심 제고를 통한 징수율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징수 대책회의(상·하반기 2회)를 통한 징수실적 및 목표달성 대책 추진 ○ 세외수입 과징실태 현장점검 및 소통형 교육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예산 10억원 이상 관리부서 중 징수율·진도를 부진한 24개 부서 점검(독촉장 적기 미발송 등 1천1백여건 150억원 시정) - 징수율 제고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형 교육 실시(총 750여명) ○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고액체납자(5백만원 이상)에 대하여 신용정보자료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시스템 개선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간(감사원·행자부·금융위) 협의를 통하여 추진 중이며, 체납징수율 제고 기대 ○ 과태료 소멸시효 중단 관련 제도개선 요청(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장기(5년 이상) 체납정리를 위한 소멸시효 중단 지침변경 요청 ○ 세외수입 진도율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매년 종합 징수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시 본청 각 실과 및 사업소와 자치구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 하고 있음

건의사항	조치결과
<p>9. 예산총계주의에 대표적인 예외적 사항인 세입·세출외 현금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세출외현금 고지 및 반환시 e-호조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실무담당자를 분리하여 확인체계를 강화하고, 반환시에는 사업부서의 담당팀장 승인을 추가하여 관리하고 있음 ○ 반환시기에 대한 예측력향상으로 정기예금 예치율을 확대하고 반환기간 경과 5년이상 장기보관금에 대한 소관부서 반환이행 독려 및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재무회계규칙」 제66조에 의거 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함
<p>10. 자치구 구금고와 시금고 은행이 다른 경우 세입 처리 등 자금 운용에 있어서 은행 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잘 점검하여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기 바람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개 자치구 구금고 중 용산구청이 시금고와 다른 은행(신한은행)으로 변경('14.11.4.)되었으며, ○ 복수금고운영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 용산구, 시금고, 구금고간 수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세입금 수납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된 약정사항을 근거로 용산구금고 세입업무 추진
<p>11.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 조직, 전산시스템, 직원교육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중요하니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변경제도 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기 바람.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및 조직 정비 : 15년도 신규 채용 인원 132명 자치구 배치 및 지방소득세 전담팀 신설 등 조직개편 완료 ○ 직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시·자치구 대상 12회 실시(연인원 1,800명) - '15년 1/14, 1/16 양일간 자치구 지방소득세 담당 대상 신고납부 관련 직무 교육 실시 - 직원 직무역량 강화, 직무연찬회 개최 : '15년 11월말

건의사항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유관협회(중소기업중앙회,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세무법인협회 등)와 네트워크 및 비상대응 체계 협약, 교육 책자 및 강사 지원 - 전국 16개 지자체에 우리시 제작 「지방소득세 편람」, 「지방소득세 신고실무 매뉴얼」, 「교육 동영상」 무료 배포(파일) 등 지원 □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교육) '17년 개인소득세 신고업무 직접수행 대비,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
<p>12. 수의계약 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계층 중 서울시에 사업장(본사)이 있는 업체를 좀 더 특별히 우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의하여 조례 개정도 추진하기 바람. (재무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1인견적 수의계약 총 1,334건 중 서울지역 업체와 1,028건(77%) 체결 ○ '15년 8월 현재 1인 견적 수의계약 총 955건 중 서울지역 업체와 731건(77%) 체결 ○ 장애인, 여성기업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종전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범위확대('14.11월) - 개정이후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총 20건 중 서울지역 업체와 17건(85%) 체결 ○ 「희망구매정보지도」 를 통한 장애인, 여성기업 서울지역 등 위치정보 및 판매제품 정보 제공('14.7월 오픈, '16.1월 재구축 오픈) ○ 전자공개수의계약(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범위)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제한가능하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내용을 각 실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 공지('15.6월) □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여성기업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 확대 적극 홍보로 많은 서울지역기업 참여 여건 마련

건의사항	조치결과
<p>13. 법인 세무조사 실시에 공정한 추진으로 시민 경제활동에 위축이 없도록 할 것. 법인 세무조사 계획수립 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여 추진 할 것.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단」 및 「과세쟁점 사전자문단」을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과세쟁점 사전자문단 운영(2015.1월) -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세무조사 계획 수립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활동 위축을 고려하여 과세자료 불성실 제출 또는 탈루 가능성이 높은 유형 및 세목, 탈세제보 등을 중심으로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 성실납세자 및 소규모 기업 등은 지속적으로 면제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운영 규칙 개정 추진
<p>14. 지방세 관계 법령 법제화 등에 대비해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하여 우리시 건의 사항을 법령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 법령 개정을 위하여 행자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등 추진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15년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p> <p>▷ 법령개정 건의 : 총36건 제출(채택 - 7건)</p> <p>최종 '15.9월 정부 입법예고안에 5건 반영</p> </div>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에도 미 반영된 안건 및 신규 안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여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사례 (자산관리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4)
2. 수의계약 관련 자료 (재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4)
3. 국회나 중앙정부 등에 세제개선을 위해 건의, 협의 등 추진한 자료 (세제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4)
4. 최근 3년간 법인세무 조사 관련 실적 (세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4)
5. 국회나 중앙정부 등에 제도개선 건의 및 반영 내역 (재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4)
6.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명단 (자산관리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4)
7. 아이디어 경진대회 관련 (평가위원 명단 등) (세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4)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8.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 수익 관련 상세자료 (재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4)
9. 장기행정수요대비 공유 재산 확보 예산 및 활용 현황 (자산관리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4)
10. 최근 3년간 20억원 이상 상수도사업본부 공사계약 현황 (재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4)
11.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준비사항 (세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4)